

연계전공 소개

연계전공은 모집단위에는 없지만 두 개 이상의 학부(과) 전공이 연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전공이다.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전공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복수학위 취득 제도이다.

- 전공분야 : 건강운동학(2020학년도 이후 신규 신청 불가), 공연예술콘텐츠, 미디어콘텐츠, 외식산업경영, 운동재활, 정원디자인, 휴먼ICT, 한류콘텐츠
- 신청자격 : 2학기 수료자, 30학점 이상의 평균 2.5이상의 재학생
- 편입생은 1학기 수료 이후 신청 가능
- 이수학점

입학년도	졸업학점	단일전공 전공학점	부전공 학점		복수전공 학점		연계전공 학점		융합전공 학점	
			주전공	부전공	주전공	복수	주전공	연계	주전공	융합
2017	130	75	54	21	39	36	39	36	0	75
2016	135	75	54	21	42	42	42	36	0	75
2015	135	75	54	21	42	42	42	36	0	75
2014	135	75	54	21	42	42	42	36	0	75

- ① 간호학과는 135 그대로, 건축학과 및 약학과 그대로
- ② 부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신청해도 기준학점을 그대로 이수하여야 함.
- ③ 졸업학점=전공+교양(교필/교선)+일반학점

* 전공 이수학점은 2017학번을 기준으로 42학점(2017학번 이전), 39학점(2017학번 이후), 으로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내규가 따로 있는 학과는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

- 세부규정
 - ① 연계전공은 1개의 전공만 신청가능
 - ② 연계전공도 학위기 수여

- ③ 중도포기 시 취득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단, 학과 전공과목을 연계전공으로 취득했을시, 전공과목으로 인정)
- ④ 전공별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목에 한 해서만 연계전공으로 인정(공연예술콘텐츠 연계전공 학생이 정원 디자인 교육과정 교과목을 들었을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
- ⑤ 매 학기 말에 이수구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이수구분을 연계전공으로 변경

• 신청방법 : SU-wings신청→책임교수 심사→연계전공 담당자 승인

• 연계전공 주임교수 명단

연계전공명	책임교수	책임교수 전화번호	책임교수 사무실
공연예술콘텐츠	박승순	3399-1686	체육관 305호
미디어콘텐츠	김영안	3399-1831	제2실습관 106호
외식산업경영	윤미은	3399-1658	제2과학관 404호
운동재활	이병희	3399-1634	제3과학관 112호
정원디자인	류병열	3391-1733	제2과학관 503호
건강운동학	유재현	3399-1670	에스라관 307호
휴먼ICT	최성욱	3399-1556	바울관 212호
한류콘텐츠	음영철	3399-1859	에스라관 110호

• 연계전공 담당자 전화 : 02)3399-3356

연계전공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 36조의 2에 의하여 삼육대학교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계전공이라 함은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 하는 전공을 말한다.

제3조 (연계전공 개설)

- ① 2개 이상의 학부(학과, 전공)에 속해 있는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개발하고, 참여 학과(부)의 협의를 거쳐, 참여 학과(부) 교수 각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있을 때 설치 발의 한다.
- ② 참여할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임교수를 선임한다.
- ③ 연계전공 개설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공명칭 및 참여 전공
 2. 전공개요 및 개설 목적
 3. 배출 인력의 진로와 진출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4. 교육내용 및 연계전공 운영 기본계획
 5. 연계전공 교육과정 편성표
 6. 참여교수 명단 및 연계전공운영위원회 구성 사항
 7. 연계전공 이수 시 졸업요건(졸업시험, 논문) 및 학위명
 8. 참여 학과 회의록
- ④ 연계전공 신설 신청은 연계전공 활성화 차원에서 매 학년도 말 신청할 수 있다.
- ⑤ 개발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승인한다.

제4조 (연계전공 폐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계전공은 폐지 대상이 되며,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1. 4학기 연속 신청학생이 없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계전공 이수자가 20명 미만일 때
2. 기타 연계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폐설 된 연계전공은 이수신청자가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한다.

제5조 (연계전공 운영) 연계전공운영은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배정한다.

제6조 (교과목 편성)

- ① 연계전공과목 편성은 연계전공에 참여한 교수들의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 개설된 과목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설 과목은 학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되, 참여 학과간 최소 1과목(3학점)이상을 교차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또한 타 학부(학과, 전공)과목도 연계전공의 과목으로 지정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참여 학과(부)에 직접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성격의 과목은 교양영역에 연계전공 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② 연계전공에 참여하는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연계전공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3과목(9학점)까지 교육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부(학과, 전공)별로 추가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 ③ 연계전공으로 개설하는 과목은 제1전공의 개설시기(학년, 학기)와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 ④ 개설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전공교과목의 폐강기준에 따른다.

제7조 (연계전공 이수신청)

- ① 연계전공 이수신청은 1학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학기 다전공 신청기간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SU-WING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자는 학사지원센터의 승인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조 (신청 및 절차)

-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전공 신청기간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SU-WINGS)를 통해 신청한다.
- ② 교무처장은 연계전공 이수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에 연계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수한 학점은 소급하여 연계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기간은 연계전공 신청 1년전 까지만 허용한다.
- ④ 연계전공 이수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학부(학과, 전공)의 제한은 없다.

제9조 (학점이수) 연계전공의 학점이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연계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연계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졸업전까지 포기기간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SU-WINGS)를 통해 신청한다. 연계전공 중도 포기자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전공의 교과목과 연계전공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및 관리)

- ① 연계전공 주임교수는 해당 연계전공의 제반사항을 관리운영 하고, 연계전공과 관련된 행정사항(졸업사정, 학위수여 등)은 원 소속 학과에서 담당한다.
- ② 연계전공 이수 인원은 참여 학부(학과, 전공)의 전임교원 수, 강의실(실험실습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전공별 연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학위수여)

- 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2개의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
- ② 연계전공 신청자 중 연계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기타) 본 운영 지침에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